

도시가스 공급 규정

사용계약 및 공사, 검사

“
 최근 “난방 시공업”과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99년 1월1일자로 전문이 개정된
 내용을 회원들이 알기쉽게 연재코자한다.
 ”

제5장 요 금

제24조(요 금)

-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장이 승인한 별표3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 8. 1시행)에 따라 순수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도매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시장에서 사전 보고 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한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변동된 요금표를 사전에 배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6조의 제1항의 납입고지서에 변동요금표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가스요금용도의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용 및 집단 에너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8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



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 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순수 발전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8.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제26조(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침사용량 또는 인정 사용량에 따라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10일전까지 회사소정의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후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예고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또는 사용제한 등으로 월중 5일이상 공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사용기간이 월중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표3의 기본요금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침에 의한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월사용량이 기본사용량이하인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해당월의 공급일수가 25일 이상인 때에 적용한다.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10원단위 미만처리)

회사는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28조(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때의 기준일은 제1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9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사용공차가 3%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1개월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제30조(보증금)

- ① 회사는 가스공급 개시후 사업자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거나 요금의 체납이 우려되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다.
- ②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약일까지의 한다.
- ③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3조 제2항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과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 ④ 회사는 제10조에 규정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미수의 요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요금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제6장 공급

제31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 1. 열량 : 표준열량 10,500kcal/㎡
최저열량 10,100kcal/㎡
 -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 3. 압력(가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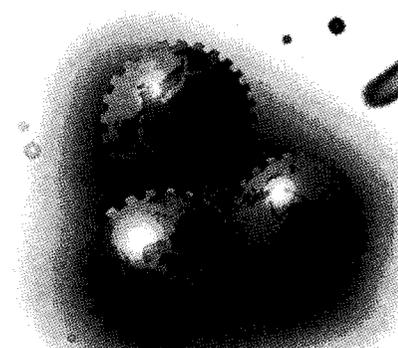
: 최고압력 250mmAq

최저압력 100mmAq

-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회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타공사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
 -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야 가스



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 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지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정 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검사·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4. 회사와 협의없이 가스공급 및 가스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7. 법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

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이 규정의 위반 또는 회사의 정당한 권고·계도사항을 위반한 때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34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면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사유가 된 사실을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로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5의 해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안전

제35조(공급시설의 안전책임)

회사는 법 및 안전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회사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① 회사는 법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 예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등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6월에 1회이상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를 6월에 1회이상 실시하고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법 제28조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고 그 실시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검사는 당해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필요한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관리소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점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하며, 1개월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노후가스 시설물에 대하여 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회사는 시설개선 권고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개월이내에 노후시설물

에 대하여 교체등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공공의 위해발생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단한 후 관할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설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코크를 폐쇄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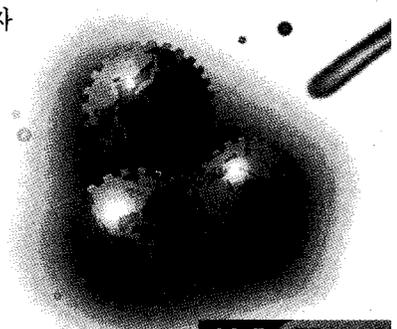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가스사용자가 안전상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특수소비기기(보일러, 온수기, 로동)를 설치·철거·개조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가스보일러 또는 온수기기 등을 설치한 때에는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사용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검사의 청구)

① 가스사용자는 제36조에서 정하는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검사결과 긴급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는 제1항 및 제36조의 검사시 입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사를 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며, 검사결과 위해요인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는 신속히 위해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39조(가스성분검사 등)

회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스의 제성분 측정결과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통지받고, 정압기 출구 및 가스 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하는 가스압력은 회사에서 측정하며, 그 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공급규정 승인·협의회 및 기타

제40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서울지역도시가스 협의회)

- ① 본 규정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가스공급 제반사항협의 및 서울지역 회사의 대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역도시가스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가스사용자 등은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규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3조(문서보관)

- ① 회사는 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검사·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산업 57244-588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